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직군 7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7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군(群)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담당업무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산업안전 감독관)	기술직 7급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근로감독관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 지도·감독 -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지도 -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 건강관리·증진활동 지도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2. 모집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직렬*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7급 (24명)	공업·보건·시설	3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관할 지역
		3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관할 지역
		3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 1) 공업직렬: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직류 / 시설직렬: 일반토목 · 건축 직류
 - 2) **근무지**는 **지방청** 또는 해당 지방청 **소속지청**이므로 반드시 **청 및 소속지청 위치, 관할 구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하여 확인
-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반드시 희망 근무지 기재(복수선택 가능)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채용예정 직렬, 직류,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4항)
-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및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검찰·경찰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 관련 수사·조사 진행 중에 있지 않은 자
- 채용 직급보다 바로 위 직급 지원자의 경우, 본인 강임 동의하에 지원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5. 10. 27.) 기준]

- 산업안전 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현 소속기관 전출 동意的 가능한 자(전출동의확인서 제출)
-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종류별 차등 우대)

※ 자격증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다음의 관련 분야 자격증, 단, 기능사 자격증은 우대 제외

※ 건축사 자격증 우대 인정([시설주사보 응시자에 한함](#))

채용직급	관련 분야 자격증
공업7급	•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 정비), 기사·산업기사(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기술사(전기응용,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산업기사(화약류제조, 화공, 가스, 화학분석,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보건7급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타(산업보건지도사)
시설7급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타(건축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5. 선발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담당 예정 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면접시험 위원이 응시자의 ① 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직무 전문성(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자를 선발
- (평가방식) 개별 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 일정

- ☐ (공고) 2025. 10. 14.(화) ~ 2025. 10. 27.(월)
- ☐ (접수기간) 2025. 10. 21.(화) ~ 2025. 10. 27.(월)
-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메일주소: eunseo8@korea.kr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김은서 주무관)
 - ※ 제출서류를 스캔하여(PDF 파일 등)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제출시 제목은 “(경채시험) ○○기관 공업 0급 홍길동”으로 작성)
 - ※ 접수마감일 24:00까지 도착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 ※ '25. 11. 11.(화) 면접시험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합격자 발표) 2025. 11. 14.(금) 예정

7.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컬러스캔(PDF파일 등)하여 제출하고,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확인할 예정임
- ① 인사기록카드 사본(전자인사시스템에서 PDF파일 출력) 1부
 - ※ 인적사항, 임용발령사항, 교육훈련사항, 포상·징계사항 등 **전체기록 제출**
-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⑤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 ⑥ 강임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해당자만)
- ⑦ 전출동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자만)

8. 임용예정일

- 임용 예정일: 2025. 11월 중 예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주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 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44-202-7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산업안전 감독관)	3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공업 또는 보건 또는 시설 7급
	3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관할 지역	
	3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관할 지역	
	3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3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주요 업무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근로감독관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 지도·감독 -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지도 -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 건강관리·증진활동 지도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계획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산재예방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에 필요한 법령 및 산업안전 전문 지식
-------	--

응시자격 요건	공통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채용예정 직렬, 직류,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4항) ○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및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검찰·경찰, 조사기관 등에서 비위 관련 수사·조사 진행 중에 있지 않은 자 ○ 채용 직급보다 바로 위 직급 지원자의 경우, 본인 강임 동의하에 지원
우대요건		○ 산업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인 '25. 10. 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1년 이상부터 차등 점수 부여)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단, 기능사 자격증은 우대 제외)
	공업7급 (일반기계, 전기, 화공)	•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 정비), 기사·산업기사(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기술사(전기응용,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산업기사(화약류제조, 화공, 가스, 화학분석, 산업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보건7급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타(산업보건지도사)
	시설7급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설 안전), 기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타(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타(건축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출 사전 동의 확인을 받은 자

응 시 원 서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고등학교부터 기재			

주 요 경 력	기 간	부 서	담당업무
	10.1.1.~12.12.31	000과	

포 상	일 자	내 용

징 계	일 자	내 용

<개인능력> ※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소지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시행처

성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	------	-----------

◎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현재까지 수행한 주요업무 내용	
특기 사항	

위 기재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고용노동부 전입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 | | | |
|------------|------|-----------|-----------------|
| ■ 성 명 | (서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 e-mail | | | |
| ■ 직 장 | | | |
| ■ 직장전화 | | ■ 연락가능 팩스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공무원 전입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직근무경력 제반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강 입 동 의 서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위 본인은 「고용노동부 경력경쟁채용(7호) 전입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 전 강임(6급 → 7급)에 동의하며, 이로 인하여 임용 후 발생하는 인사 및 보수 등 기타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전출 동의 확인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고용노동부로의 전입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전출 동의가 가능하기에 사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 인사부서장)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